

##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상담서비스 안내

### Q 119구급상황관리센터란?

A 19개 시도본부별 119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, 구급대원(1급 응급구조사, 간호사)이 24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합니다.

### Q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

A 질병 상담, 응급처치 안내, 병·의원, 약국 안내, 이송병원 선정 등

# 한밤 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

# 응급 증상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, 증상에 맞는 병원·진료과가 궁금할 때

# 주말·공휴일, 명절 연휴 등 진료 가능한 병원, 문 여는 약국이 궁금할 때

### Q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용방법

A '119'로 신고하여 '의료상담' 요청 \* 문자 또는 영상통화를 통한 상담 가능

## 재외국민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

언제, 어디서든, 누구나 응급의학과 전문가가 24시간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### 재외국민



### 응급처치 요령

발목을 접질렀을 때 어떻게 하나요?



### 약품 구입 및 복용 방법

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?



### 현지 의료기관 이용방법

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?  
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될까요?



### 환자 국내이송 일반절차

다쳤는데 한국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?

### Q 재외국민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방법

A 전화(+82-044-320-0119), 전자우편(central119ems@korea.kr)  
누리집(www.119.go.kr), 카카오톡(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)  
LINE(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)



소방청 카카오톡  
응급의료 상담서비스  
바로가기

119구급대원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 
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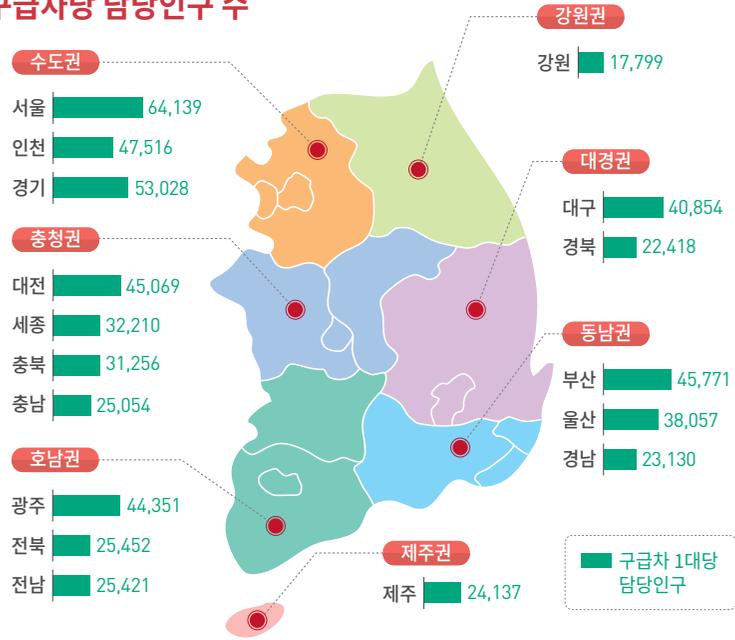
#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



소방청  
National Fire Agency 119

# ☀️ 중증응급환자에게 119구급차를 양보해 주세요

## 구급차당 담당인구 수



“생사의 기로에서 당신이 이용한 구급차는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입니다.”

##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

중증응급환자(심정지, 뇌졸중, 심근경색, 중증외상)를 위해 119구급차를 양보해 주세요.

단순 치통	단순 감기	단순 외상 (찰과상·타박상·열상)	주취자	외래진료 / 자택이송

“술에 취했어요” “택시가 안잡혀요”

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합니다.

# ☀️ 119구급대원 폭행, 이제 멈춰주세요

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전체(건)	203	196	248	287	245
주취자(건)	183건 (90.1%)	168건 (85.7%)	203건 (81.8%)	245건 (85.4%)	205건 (83.7%)
피해대원 수(명)	241	240	335	392	332

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하며,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여 엄정 대응합니다.

# ☀️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 주세요

##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도구

중증도 분류	정의	사례
Level 1	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(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)상태	심정지, 무호흡, 무의식
Level 2	생명 혹은 사지,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	심근경색, 뇌출혈, 뇌경색, 머리·복부·가슴 관통상
Level 3	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	경중의 호흡곤란, 출현 동반 설사
Level 4	환자의 나이, 통증이나 악화 또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때 1~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상태	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,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
Level 5	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,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,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	감기, 장염, 설사, 열상, 변비, 치아(잇몸) 문제

##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

- 환자 증상 및 중증도 분류, 진료과 유무, 처치·수술 가능 여부 등
-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, 응급실 진료불가 사항(전산장애, 장비 고장 등)

구급대원은 **119법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이 원칙**이며, 환자·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다!